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3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박순자 · 김한표  
민경욱 · 엄용수 · 김태흠  
김성원 · 곽대훈 · 함진규  
김석기 · 김기선 · 윤영석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경우 그 기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최근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,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,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,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

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 
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).

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,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(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<u>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,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(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	--